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Problems and Direction for Revision on Penal Regulations in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김 재 윤**

Kim, Jae-Yoon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개정방향 |
| II. 환경범죄의 발생과 법원의 처리 현황 | V. 맺는 말 |
| III.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 | |

현재 인류는 자연의 황폐화, 지구온난화 등 인류전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생태학적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위험사회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Umwelt)의 보존과 유지는 하나의 시대적 요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는 개인과 단체를 넘어 국가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승인된 지도가치가 되었다.

형사특별법으로서 환경범죄단속법은 국민에게 환경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범죄를 근절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효율적인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환경범죄단속법은 일반예방기능을 강조하고 중형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형의 강화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은 특별가중처벌법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일반법인 형법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중형주의에 입각한 환경범죄단속법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양형에 있어 실제로 중형이 선

투고일 : 2018. 4. 23. / 심사의뢰일 : 2018. 5. 14. / 게재확정일 : 2018. 6. 8.

*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법학”이란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국내학술대회(2018.3.15.)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토론에서 귀한 의견을 주신 김영철 변호사님(법무법인 대중 대표변호사)과 정신교 교수님(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Professo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고됨으로써 환경범죄 억지효과의 달성과 효율적 환경보호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의 입법목적과 달리 실제 법 적용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심각한 괴리는 법집행에 있어 불신감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환경범죄의 전체적인 발생과 그에 따른 법원의 처리 현황을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환경범죄를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제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에 대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형벌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주제어] 환경범죄, 환경형법, 벌칙규정, 법정형, 양벌규정

I. 들어가는 말

현재 인류는 한정된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황폐화, 에너지의 무절제한 소비에 따른 수질·대기·토양의 오염과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 인간의 탐욕으로 점차 감소해 가는 동·식물의 종다양성 등 인류전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생태학적 위험사회’(ökologische Risikogesellschaft)¹⁾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위험사회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Umwelt)²⁾의 보존과 유지는 하나의 시대적 요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의 기반유지에 관한 문제이자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보호는 개인과 단체를 넘어 국가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승인된 지도가치가 되었다.³⁾ 이러한 환경보호라는 지도가치를 바탕으로 환경법, 환경형법, 민법, 행정법

1)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으로는 김재운,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126쪽 이하 참조.

2) 환경개념은 그 개념의 폭에 따라 보통 “최광의의 환경개념”, “광의의 환경개념” 및 “협의의 환경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① 최광의의 환경개념은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환경”,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② 광의의 환경개념은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환경”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환경개념은 “자연환경”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일수, “우리나라와 서독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단국대 사회과학논집 창간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111쪽; Triffterer, “Die Rolle des Strafrechts beim Umwelt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StW 91, 1979, S. 309, 311.

3) 윤용규, “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509쪽.

등 모든 법 영역은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각자의 수단으로 환경오염 행위 또는 환경범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환경형법’(Umweltstrafrecht)은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환경오염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가운데 형벌(자유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는 영역으로, “환경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의 총체”⁴⁾ 또는 “공권력의 주체가 환경법규에 위반한 환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⁵⁾이라고 할 수 있다.⁶⁾

특히 환경형법 가운데 형사특별법으로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은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중형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정형의 강화라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환경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고취 및 효율적인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은 특별가중처벌법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일반법인 형법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중형주의에 입각한 환경범죄단속법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양형에 있어 실제로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환경범죄 억지효과의 달성과 효율적 환경보호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환경범죄의 전체적인 발생과 그에 따른 법원의 처리 현황을 개관하고(Ⅱ),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 단속법상 형벌규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환경범죄를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제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에 대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형벌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Ⅳ).

4) 이상문, “환경형법의 개념과 보호법익”, 경찰법연구 제4호, 한국경찰법학회, 2006, 31쪽.

5)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6판, 박영사, 2013, 29쪽.

6) 환경형법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하태영, 형법각칙 개정연구[6]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 환경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21쪽 이하 참조.

II. 환경범죄의 발생과 법원의 처리 현황

1. 환경범죄 발생 현황

환경범죄의 경우 1991년 3월 두산전자에 의한 낙동강폐놀오염사건에서 보듯이 한번의 위반행위에 의해 상당한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체 발생 건수만으로 피해의 규모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체 환경범죄의 발생추이로부터 피해규모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환경사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12,213건이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매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감소추세는 환경단속공무원의 단속실적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하겠지만 일반국민과 환경 관련 기업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때 크게 증대된 데 있다고 본다.

〈표 1〉 환경사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2006년~2015년)

연도	구분	발생건수	범죄율*	기준년도 대비 증감률(%)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06		12,213	24.9	-	11,962	97.9	6,914
2007		9,350	19.0	-2.34	9,060	96.9	6,339
2008		8,397	16.9	-31.2	8,425	100.3	5,047
2009		6,536	13.1	-53.5	6,478	99.1	4,580
2010		5,123	10.1	-58.1	4,997	97.5	3,089
2011		5,096	10.0	-58.3	4,832	94.8	4,725
2012		5,950	11.7	-51.3	5,854	98.4	6,732
2013		6,591	12.9	-54.0	6,435	97.6	6,829
2014		5,027	9.8	-58.8	4,977	99.0	5,569
2015		5,422	10.5	-55.6	5,311	98.0	5,587

*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 당 범죄 발생건수

**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126쪽.

환경사범에 대한 검거율은 전반적으로 95%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환경범죄가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나 인지에 의하기보다는 환경운동연합⁷⁾ 녹색연합⁸⁾ 등과 같은

7)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fem.or.kr/>>.

8)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

환경 관련 NGO나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기관의 고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매년 발생한 환경범죄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이 2,430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건이 1,971건으로 다른 환경범죄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2> 참조).

<표 2> 환경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2011년~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수질 수생태 계법 위반	소음· 진동규 제법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오수 분뇨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하천법 위반	자연 공원법 위반
2011	5,096	1,718	1,091	153	1,110	240	448	212	124
2012	5,950	1,843	980	203	1,172	209	941	499	103
2013	6,591	1,971	1,079	202	2,430	143	504	158	104
2014	5,027	1,831	1,005	145	1,221	163	264	286	112
2015	5,422	1,995	937	155	1,139	124	623	292	157

*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127쪽.

2.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환경사범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사건처리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환경범죄가 재산형(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범죄에 대하여 범죄억지력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환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 인식을 떨어뜨리게 한다(<표 3> 참조).

특히 환경범죄단속법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위반자 처리내용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뿐만 아니라 5년간 처리된 1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2013년도의 경우 처리건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경범죄단속법이 개별 환경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법규정과 실제 법 적용상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범죄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낮은 벌금형이 선고될 뿐이다. 그 결과 사업주가 약간의 벌금을 내고서라도 환경오염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다

9) 이승현/김용세,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환경·교통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31쪽.

고 판단하여 계속적으로 환경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마저 있어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범죄억지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다.¹⁰⁾

〈표 3〉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및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사범에 대한
제1심 공판 처리현황(2012년~2016년)

죄명	처리										
	금년 접수		합계	판결						송치	기타
				실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2012	226	235	3	33	167	5	2	-	-	25
	2013	285	260	9	21	174	11	4	-	-	41
	2014	203	235	-	27	149	13	15	-	-	31
	2015	233	213	1	21	152	12	5	-	-	22
	2016	253	262	8	22	183	8	3	-	-	38
수질 수생태계법 위반	2012	169	158	8	41	74	7	4	-	-	24
	2013	146	139	2	21	84	6	20	-	-	6
	2014	155	168	1	23	97	7	4	2	-	34
	2015	141	134	2	16	100	1	7	-	-	8
	2016	142	104	1	20	69	2	2	-	-	10
환경범죄 단속법 위반	2012	2	2	-	2	-	-	-	-	-	-
	2013	3	-	-	-	-	-	-	-	-	-
	2014	5	4	-	4	-	-	-	-	-	-
	2015	6	6	-	4	-	1	-	-	-	1
	2016	6	6	-	5	1	-	-	-	-	-

* 기타: 형의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년도

III.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

1. 중형주의에 입각한 과도한 법정형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일반법인 형법전의 법

10) 이승현/김용세, 위의 연구보고서, 35쪽.

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에 비해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¹¹⁾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2항). 그러나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은 그 보호객체로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환경매체인 먹는 물과 동일선상에 놓고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그 법정형을 같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¹²⁾ 사망과 상해의 법정형을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하한형이 5년 이상으로 동일하고 상한형으로 무기형까지 선고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습범 내지 누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즉 환경범죄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환경사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제3조 제1항), 환경보호지역의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 상실(제4조 제3항), 폐기물의 불법투기·매립 행위(제7조)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투기·매립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로 인해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단속법 제8조 누범 가중규정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유기징역의 상한이 종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된 점, 환경범죄단속법은 개별 환경법률상의 벌칙규정에 근거하여 또 다시 누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가혹하게 이중삼중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점, 대표적인 가중처벌 특별법인 “특정

11) 판례에 따르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란 단순한 추상적인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실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에 대한 절박성 내지는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특정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겼다고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한다.”고 한다(인천지방법원 1995. 10. 25. 선고 95고합486 판결).

12) 이와 달리 예컨대 형법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는 “제192조 제2항 또는 제193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망과 상해의 법정형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차 누범가중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¹³⁾

2.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실범에 있어 결과책임의 지나친 강조

형법상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형법 제14조). 즉 형법은 고의범을 행위태양의 기본으로 삼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결과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환경범죄는 고의로 인한 경우보다 일상적인 조업행위를 함에 있어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고의범보다 과실범의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환경범죄단속법에서도 결과불법을 고려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제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2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3항) 처벌한다.¹⁴⁾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실범의 법정형과 관련하여 자유형의 경중을 살펴보면 불법의 정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형법 제268조),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법 제5조 제2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보다 그 상한형이

13) 윤용규, 앞의 논문, 526-527쪽.

14) 환경범죄단속법 이외에 수질수생태계법 제78조 제2호(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항목·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제1의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제10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 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3호(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의 개별 환경법률에서도 과실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두 배나 높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가중처벌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함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불법성에 대해 결과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실범의 법정형은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면서 그 법정형도 고의범보다 현저히 낮게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법정형의 하한을 너무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과실범의 행위의 반가치성과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성이 있으며, 과실범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¹⁵⁾

3. 법인 사업자에 대한 낮은 벌금형

개별 환경법률의 벌칙규정은 벌칙의 장 말미에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양벌규정이란 행정법상 벌칙에 채용되는 제도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¹⁶⁾ 우리나라 형법은 대륙법계, 특히 독일형법의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오직 자연인의 범죄능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환경법률을 포함한 다수의 특별형법(예컨대 행정형법, 경제형법, 환경형법, 조세형법 등)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의 입법형식에 의해 벌금이라는 형벌의 수형능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양벌규정은 직접적인 위반행위자와 동시에 처벌받게 되는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즉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인 개인 사업주와 달리 법인 사업주는

15) 김혜정,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85쪽, 90쪽; 이승현/김용세, 앞의 연구보고서, 150-151쪽.

16)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150쪽.

그 인격이 법적으로 의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존재형태와 내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만은 개인 사업주와 법인 사업주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행정법률은 양벌규정을 규정함에 있어 먼저 벌칙의 전제가 되는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을 열거한 다음 이러한 규범이 위반된 경우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마지막에 양벌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양벌규정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 직접적 위반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¹⁷⁾

환경범죄단속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전형적인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¹⁸⁾ 다른 양벌규정과 마찬가지로 환경범죄단속법상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 대한 형벌로서 유일하게 벌금형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 사업주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은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종업원과 동일한 벌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법인 사업주에 대한 제재로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¹⁹⁾²⁰⁾ 무엇보다 종업원에 비해 자산규모가 수십 조에 달하는 대기업(법인)에게 환경범죄단속법 제1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²¹⁾ 내지 자연인에 비해 약 3배까지 상향조정된 3억 원 이하의 벌금형²²⁾이 법인 사업주

17) 김재운, 기업의 형사책임, 마인드맵, 2015, 107-108쪽.

18) 환경범죄단속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이는 약 400여개의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양벌규정의 문제이기도 한다.

20) 양벌규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 고위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재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벌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법인의 고위경영자(대표이사, 이사, 사실상 이사,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자신의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 범위 내의 활동과 관련하여 감독권 내지 통제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알지 못한 때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의 고위경영자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삼벌규정의 신설을 통해 법인을 포함하여 종업원과 같은 직접적 위반행위자 이외에 기업(법인) 고위경영자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으로는 김재운, 앞의 책, 2015, 373-379쪽; 김중덕, “기업범죄에 있어서 개인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18집, 한국법학회, 2005, 327쪽 이하 참조.

21) 대표적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에게 얼마만큼 타격이 될지는 의문이다.²³⁾ 오히려 법인 사업주는 자연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결정된 벌금액 정도는 사업 활동을 위한 허가료 또는 경비 정도로 인식하고 기꺼이 감수하거나, 주주의 이익배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 상품가격의 인상 등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래의 범죄억지라는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²⁴⁾

IV.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개정방향

1. 과도하게 가중된 법정형의 하향 조정

1.1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의 개정방향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우선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친 행위와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인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호객체로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환경매체의 하나인 먹는 물과 동일선상에 놓고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개인적 법익이나, 먹는 물이라는 환경매체의 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식수의 안전성이라는 보편적 법익으로서 그 불법의 실질을 달리한다. 특히 환경형법에 있어 생태학적·인간중심적 법익보호²⁵⁾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적 법익으로

22) 예컨대 상표법 제97조(3억 원 이하의 벌금), 특허법 제230조(3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10억 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12조 제1항(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은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법인에 대하여는 자연인에 비해 약 3배가량 상향조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23)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220쪽;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110쪽.

24) 김재윤, 앞의 책, 2015, 135-136쪽.

25) 이 견해는 물, 공기, 토양, 식물, 동물 등의 환경매체는 독립 생태학적 법익으로 인정되지만 환경(Umwelt)은 오로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으로 그 기능만 보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환경은 현대 및 미래로 이어지는 인간의 인간다운 환경조건 보전에 관한 이익과의 관계에서만 독립된 법익으로 간주된다는 견해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설적 견해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는 하태영, 앞의 연구보고서, 125-126쪽 참조.

서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이 보편적 법익으로서 식수의 안전성보다 더 두텁게 보호될 필요성이 있고, 그 결과 법정형의 경중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보호법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행위의 법정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끼친 행위보다 경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 결과 형법에서 살인의 죄와 상해와 폭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생명에 위해를 끼친 행위와 신체에 위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분리하여 후자의 법정형이 전자의 법정형보다 경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은 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서 오염물질 불법배출치사죄를 규정함에 있어 치상에 이른 경우(다치게 한 경우)와 치사에 이른 경우(죽게 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범으로서 형법전의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은 치상과 치사의 법정형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체포·감금치상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체포·감금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281조 제2항),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형법 제301조), 강간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301조의2)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도 치상과 치사를 구별하고 전자의 법정형을 후자의 법정형보다 경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오염물질 불법배출치사죄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라고 본다. 이는 유사한 범죄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아도 쉽게 할 수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안전조치의무)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죄는 고의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과실로 중한 결과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마찬가지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역시 고의로 오염물질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고 과실로 중한 결과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와 동일

하게 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그러나 법정형은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할 때 현저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고의기본범죄가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위반에 그치는 것과 달리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은 단순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을 넘어 이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쳤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치사가 아닌 치상 부분까지 상한형으로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치게 중한 형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특별법상의 진정결과적가중범과의 법정형을 상호 비교하여 적절한 선에서 형벌의 하향조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해 볼 때 제1항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제2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경중의 순서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전 조문은 같은 조에서 여러 조항이 있을 경우 경한 죄(경한 법정형)에서 출발하여 중한 죄(중한 법정형)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를 보더라도 제1항에서 보통살인죄를 규정하고 보통살인죄보다 불법이 중한 존속살해죄를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는 앞서 제시한 법정형 개정방향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경한 죄에서 중한 죄로 개별 조항의 순서를 재배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1.2 환경범죄단속법 제8조(누범의 가중)의 개정방향

환경범죄단속법의 누범가중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견해는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가 감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습범 내지 누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합리적 근거를 갖게 된다.”²⁶⁾고 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환경범죄단속법상 누범가중의 법정형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종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된 점, 제3조 제3항을 위반(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제3조 1항을 위반(3년

26) 김홍균,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법조 통권 제558호, 법조협회, 2003.3, 228쪽.

이상 15년 이하 징역)하였고 하여 무기형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환경범죄단속법은 개별 환경법률상의 벌칙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에 대한 적극적·엄정한 대처라는 형사정책적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이에 덧붙여 누범가중 규정을 별도로 두어 또 다시 가중처벌함으로써 가혹하게 이중삼중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는 점, 대표적인 가중처벌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차 누범가중 규정이 없다는 점, 형법상의 누범가중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점,²⁷⁾ 이러한 이론상의 이유를 떠나 환경범죄단속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이 누범규정이 실제 형사재판에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근거 없이, 그리고 실제로 법 적용이 된 사례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법정형만을 상향하여 규정한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환경범죄단속법의 누범가중 규정은 삭제하고 누범사유에 해당한다면 형법상의 누범규정(형법 제35조)을 적용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과실범)의 개정방향

환경범죄단속법의 과실범 규정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가중처벌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 제2항과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을 비교할 때 그 법정형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간 형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²⁸⁾

한편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 제2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결합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죄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보다 훨씬 더 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중된 형벌만큼 실제 재판에서도 중한 형벌이 선고되어 범죄억지 효과를 충실히 거두고 있는지

27) 윤용규, 앞의 논문, 527쪽; 이승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3권 제2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8, 136쪽.

28) 같은 지적으로 이승현, 위의 논문, 138쪽.

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5기 양형위원회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²⁹⁾ 이는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실범의 법정형만을 과도하게 상향조정해 놓았지 실제 재판단계에서는 전혀 적용된 적이 없어 현실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법조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발 양보하여 실제 양형단계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도 얼마만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는 그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 평균형량은 금고 8.54월이며, 형량분포는 금고 6월에서 12월까지가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표 1> 참조),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 제2항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하여도 실제 양형단계에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선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형량분포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4	18	24		
업무상과실치사	수	0	5	18	1	89	81	2	51	57	1	6	2	313	8.49
	비율	0.0	1.6	5.8	0.3	28.4	25.9	0.6	16.3	18.2	0.3	1.9	0.6	100.0	
중과실치사	수	0	0	0	0	1	1	0	1	5	0	0	0	8	10.50
	비율	0.0	0.0	0.0	0.0	12.5	12.5	0.0	12.5	62.5	0.0	0.0	0.0	100.0	
전체	수	0	5	18	1	90	82	2	52	62	1	6	2	321	8.54
	비율	0.0	1.6	5.6	0.3	28.0	25.5	0.6	16.2	19.3	0.3	1.9	0.6	100.0	

* 출처: 김세중,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위원회, 2016, 14-15쪽.

이처럼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실범의 법정형은 환경범죄가 대부분 고의에 의해서보다는 과실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한 형벌이 환경범죄의 범죄억지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과도하게 상향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서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실범이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설사 재판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 제2항 위반죄가 인정되어 그에 대한 양형을 하더라도 종래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이 평균형량에 있어 금고 8.54월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법정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실범의 법정형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대폭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9) 김세중,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위원회, 2016, 5쪽.

3. 환경범죄단속법 제10조(양벌규정)의 개정방향

환경범죄단속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형 환경범죄의 범죄억지 효과를 보다 실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환경범죄단속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부과되고 있는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 연결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 연결 분리는 이미 상표법 제97조(2001년 개정), 특허법 제230조(2001년 개정) 등 일부법률에서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 연결 분리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을 통해 기업범죄에 대처하는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증권범죄 등 기업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 법제심의회 형사법 벌금형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양벌규정에서 법인 사업주와 위반행위자의 법정 벌금액의 연결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위반행위자의 벌금액과 법인의 벌금액을 분리하여 증권거래법(1992년), 독점금지법(1992년), 부정경쟁방지법(1993년),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97년) 등 2003년 말까지 54개의 법률의 신설이나 개정에 있어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벌금액을 1억 엔부터 5억 엔까지 대폭 상향조정하였다.³⁰⁾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연인의 형사책임과 독립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자연인과 법인의 자산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벌금형 부과에 따른 동등한 범죄억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벌규정을 둔 모든 법률에서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 연결을 분리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액의 벌금형이 기업(법인)에 부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① 기업의 자산규모와 ② 기업범죄의 피해의 중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기업형 환경범죄를 포함하여 기업범죄는 개인이 초래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전하게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무리하게 개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 개인이 모두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책임을 지게 하거나, 범죄의 중대성에 맞지 않는 제한적인 책임만을 지게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는 타당한 결론이 아니다. 따라서

30) 山本和昭, “兩罰規定における業務主に對する罰金額と行爲者に對する罰金額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時報, 第1402号(1992/1), 3쪽 이하; 岩橋義明, “兩罰規定における罰金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第773号, 判例タイムズ社, 1992.3, 61쪽 이하.

기업에게는 스스로가 실행한 범죄에 대해 자신의 자산규모나 야기한 범죄의 중대성에 맞는 형사제재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³¹⁾

다음으로, 양벌규정에서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 연결을 분리하였다면 기업(법인)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액의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기업(법인)의 벌금형을 자연인에 비해 약 3배까지 상향조정한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상표법 제97조(3억 원 이하의 벌금), 특허법 제230조(3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서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법인에 대하여는 자연인에 비해 약 3배가량 상향조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벌금을 3배까지 상향조정하더라도 대부분 3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 자본규모가 수십 조에 달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³²⁾ 그리고 부과된 벌금도 주주의 이익배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 상품가격의 인상 등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범죄억지력이 의문시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독일과 같은 일수벌금형³³⁾이나 주식벌금제의 도입이 어렵다면 기업범죄의 억지력과 벌금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금액의 상한을 10억 원 이하³⁴⁾로 정하고 벌금액수의 구체적 확정요소로 법인과 개인의 자산규모를 법관이 의무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³⁵⁾

미국에서도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 of 1984)에 의해 시작되어 1991년 11월 기업을 포함한 조직체에

31) 川崎友巳,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2004, 415쪽.

32)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총자산 262.2조 원, 매출액 201.9조 원, 순이익 22.7조 원에 달한다. <<http://www.samsung.com/sec/ir/financial-information/financial-valuation-snapshot/>>, 검색일: 2018.3.9.

33) 일수벌금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로는 안성훈,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8권 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311-340쪽; 이상한, “양형기준과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한양법학 제 25권 제3호, 한양법학회, 2014.8, 279-301쪽;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75-97쪽;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57-290쪽 참조.

34) 이미 양벌규정을 통해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 제1항, 건축법 제112조(양벌규정) 제1항 및 제2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양벌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3조(양벌규정) 및 제21조 제2항 등이 있다. 또한 2018.2.9.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제66조의2)함으로써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2018.2.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35) 김재윤, 앞의 책, 2015, 419-421쪽.

대한 연방 양형가이드라인(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 제8장³⁶⁾을 통해 지속되었다. 특히 연방 양형가이드라인 제8장은 기업(법인)에게 적정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액을 상향조정하여 고액의 납부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고, ② 벌금형의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가중사유(예컨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정하게 실시하여 범죄발견 후 형사사법 기관 등에 의한 수사예의 적극적 협조 등)와 감경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③ 고액의 벌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없는 기업(법인)에 대한 분납을 인정하여 그 기간 동안 기업(법인)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벌금형의 집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³⁷⁾

결론적으로,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미국 연방 양형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환경범죄단속법 제10조의 양벌규정에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개인과 법인의 벌금형 연결을 분리하여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 맺는 말

환경범죄단속법은 개별 환경법률상의 벌칙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가중처벌, 자연생태계 침해행위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의 가중처벌 등을 통해 환경범죄를 근절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환경을 보호하려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법정형은 특별가중처벌법의

36) <http://www.ussc.gov/sites/default/files/pdf/guidelines-manual/2014/CHAPTER_8.pdf> 참조

3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재윤, 앞의 책, 2015, 413-417쪽 참조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일반법인 형법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중형주의에 입각한 환경범죄단속법은 실제 법 적용에 있어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환경범죄 억지효과와 달성 과 효율적 환경보호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의 입법목적과 달리 실제 법 적용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심각한 괴리는 법집행에 있어 불신감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중하게 설정된 법정형은 다른 특별법상의 법정형과 상호 비교하여 적정한 선에서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재판에서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으로 가중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환경범죄단속법 제8조(누범의 가중)는 삭제하고 누범사유에 해당한다면 형법상의 누범규정(형법 제35조)을 적용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환경범죄단속법 제5조(과실범)의 법정형도 지나치게 가중되어 있는데,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이 평균형량에 있어 금고 8.54월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실제 재판에서 적용 가능할 수 정도로 대폭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0조는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해당 조문의 벌금형”(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자산규모가 수십 조에 달하는 (대)기업에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형사제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직접적 위반행위자와 법인의 벌금형 연결을 상호 분리하여 법인 사업주에게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억 원 이하 내지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환경범죄단속법은 개별 환경법률상의 벌칙규정에 우선권을 넘겨주고 환경범죄에 대한 최후수단(*ultima ratio*)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환경범죄단속법은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개별 환경법률상 벌칙규정에 덧붙여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해나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의 야기 또는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에 이른 침해결과의 야기라는 중대한 법익침해에 국한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김재운,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_____, 기업의 형사책임, 마인드맵, 2015.
- 김혜정,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6판, 박영사, 2013.
- 서철원, 미국형법, 법원사, 2005.
- 손동권/김재운,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 이승현·김용세,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환경·교통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하태영, 형법각칙 개정연구[6]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 환경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川崎友巳,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2004.

2. 학술지

- 김일수, “우리나라와 서독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단국대 사회과학논집 창간호,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109쪽 이하.
-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191-227쪽.
- 김종덕, “기업범죄에 있어서 개인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18집, 한국법학회, 2005, 327-353쪽.
- 김홍균,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법조 통권 제558호, 법조협회, 2003.3, 195-233쪽.
-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101-132쪽.
- 안성훈,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8권 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311-340쪽.
- 윤용규, “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비

교형사법학회, 2009, 509-536쪽.

이상문, “환경형법의 개념과 보호법익”, 경찰법연구 제4호, 한국경찰법학회, 2006, 26-45쪽.

이상한, “양형기준과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한양법학 제25권 제3호, 한양법학회, 2014.8, 279-301쪽.

이승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3권 제2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8, 121-142쪽.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75-97쪽.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57-290쪽.

山本和昭, “兩罰規定における業務主に對する罰金額と行爲者に對する罰金額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時報, 第1402号(1992/1), 3쪽 이하.

岩橋義明, “兩罰規定における罰金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第773号, 判例タイムズ社, 1992.3, 61쪽 이하.

Otto Triffterer, “Die Rolle des Strafrechts beim Umwelt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StW* 91, 1979, S. 309-350.

3. 기타자료

김세종,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위원회, 2016.

고용노동부, 2018.2.9.자 보도자료.

[Abstract]

Problems and Direction for Revision on Penal Regulations in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Kim, Jae-Yoon*

At present, human beings live in an ‘ecologically dangerous society’ that threatens not only the survival of humanity as a whole but also the life of future generations, such as degradation of nature and global warming.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n this ecologically dangerous society has become a demand of the times. And now,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become an approved guideline value from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eyond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s a special criminal law,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aim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danger of environmental crimes and eradicate environmental crimes to effectively protect human lives and the environment. To achieve these legislative objectives,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emphasizes general preventive functions and adopts a method of reinforcing the statutory punishment based on the heavy penalty system. However, even if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special aggravated punishment law, the legal form of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has a problem of imposing excessive penalties over the illegal or liability of acts compared with the statutory punishment of penal code. It is doubtful whether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based on the heavy penalty system has faithfully attained the purpose of achieving environmental crime deterrence effect and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by sentencing to a heavy penalty at the examination of the sentence, which is the final stage of trial. This is because, unlik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the reality of actual legal application is rather different. This serious gap between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and the sentence only leads to distrust in law enforcement.

* Professo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Therefore, in this paper, we first outline the overall occurrence of environmental crimes and the status of court processing accordingly. Next, we have examined what kind of problems exist in the penal regulations in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which prevent it from properly functioning as effective sanctions for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rime,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special law regulating environmental crime. Based on this, we review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relevant penal regulations in order to enable the Environmental Crimes Control Act to respond realistically and effectively to environmental crimes.

[Key Words] environmental crime, environmental criminal act, penal regulation, statutory punishment, joint penal provision